



# 아리조나 한인 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Arizona

정 관

(개정안)

2013년 12월 14일

Phoenix Arizona

U.S.A.

## 제1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아리조나 아리조나 한인 상공회의소라 칭한다, Korean Chamber of Commerce of Arizona (KCCA).

### 2 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침목을 도모하고 사업정보의 교환등 상호부조의 기틀을 마련하여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목적을 둔다.

###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아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 둔다.

### 제 4 조: 형태

본회의 재정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은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상공업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자라야 한다.

## 제 2 장: 임원 및 고문

### 제 6 조: 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2인

감사

사무총장

재무

조직

서기

홍보

봉사

기획

교육

문화

## 2. 고문 및 자문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수있다.

### 제 7 조: 임원의 자격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는 입후보자가 없는경우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경우 재투표에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부회장, 사무총장과 모든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5. 각부서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회의 동의하에 증감할수있다.

### 제 9 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며 표결이가부 동수일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소집, 운영, 유지등을 관할하며 예산편성 및 관계규정을 조관한다.
5. 재무는 본회의 예산관리와 집행을 관장한다.
6. 조직부장은 본회의 모든 조직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7. 홍보부장은 본회의 모든 홍보에 관한일을 담당하며 대변인 역할을한다.
8. 체육부장은 체육에 관한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9. 서기는 모든 회의기록과 회의록을 보관 관장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수도있다.

## 제 3 장: 집회

### 제 11 조: 정기총회

1. 매년 11 월에 개최하며 다음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가) 임원의 선임에 관한사항
- 나)정관개정과 인준
- 다) 사업계획, 집행보고
- 라)예산 및 결산보고
- 마) 회원의 회비, 이사비의 결정
- 바)기타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

2.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2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시 이사회 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3 조: 이사회**

1. 이사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또는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2. 이사회는 이사장 1 인 부이사장 2 인을 두며 10 인이상 50 인 이하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 가)정관개정
  - 나) 임원의 인준
  - 다) 이사의 공천
  - 라) 예산 및 결산심의
  - 마)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바)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인증
  - 사)기타 중요사항
4.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5. 의결은 7 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이사회는 매 2 개월계회하며 필요에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할수있다.

**제 14 조: 회의소집의 공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장이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며 회의 개최일로부터 10 일 이전에 공고하고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

#### 제 15 조: 사업

본회는 다음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한다.

1. 상공인간의 경제윤리 확립 및 상도덕의 양양을 위한 협력과 조정사항
2. 정기간행물 및 경제정보교환
3. 각종회의 및 세미나 개최
4. 정부협조 기관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에 관한 정책변동등 상공업에 미칠수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조례에 관한 연구
5. 상공인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사항
6. 타 지역의 본회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 16 조: 자원

1. 본회의 자원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 가) 정기회비 및 이사회비
  - 나) 찬조금
  - 다) 기타 사업 수입금
2. 정기회비 및 이사회비는 1년에 \$200로 하되 그증액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다.
3. 경상비를 포함하여\$200 이상의모든 재정지출은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 17 조: 자원의 보관

징수된 자원은 아리조나 상공회의소 명의로된 은행구좌에 입금하되 회장단의 공동 인명으로 인출되게 한다.

##### 제 18 조: 장부비치

사무총장은 재정장부를 관리하며 매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 6 장: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취득은 다음절차에 의한다.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회비와 함께 본회의 소정의의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전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때 7일내에 제 5 조의 요건에 구비여부를 조사하여 가부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외: 요건구비에 의문이 있을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의결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다시 가입을 원하는 자는 전회원시 미납된 총회비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 제 21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의 사임은 사유서를 본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하고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본회의 목적 및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 정족수 3분의 2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 건의, 총회에서 제명할수 있다. 제명자는 그날로부터 일년이 경과되어야만 본회에 재가입신청을 할수있다.

#### 제 22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60 일 이상 정회원인자) 가지며 피선거권 (1년 이상 정회원인자) 을 가진다.

#### 제 2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한다.
2. 회원은 정관준수와 회비납부 및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영업 및 사업소의 변경등 이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선거관리 위원회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이 임기만료 되는해 9 월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회는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제 1 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 조: 기타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조: 본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